

사방지 지정 고시(변경)

2016년 사방사업(사방댐)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호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변경) 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7. 13.

거창군수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 사방지 지정명세서와 같음

구분	토지소재지				면적(m ²)		사방사업 종류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적	지정면적		
당초	거창	거창	장팔	산82외 5필지	88,282	672	사방댐	
변경	거창	거창	장팔	산82외 5필지	88,282	783	사방댐	

2. 사방지 지정사유 : 2016년 사방사업 대상지 변경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댐

4. 사방지 지형도면 : 붙임도면 참조

5. 행위제한 : 사방지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사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6. 이해관계인은 우리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 산림녹지과(☎055-940-34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사방지 지정 명세서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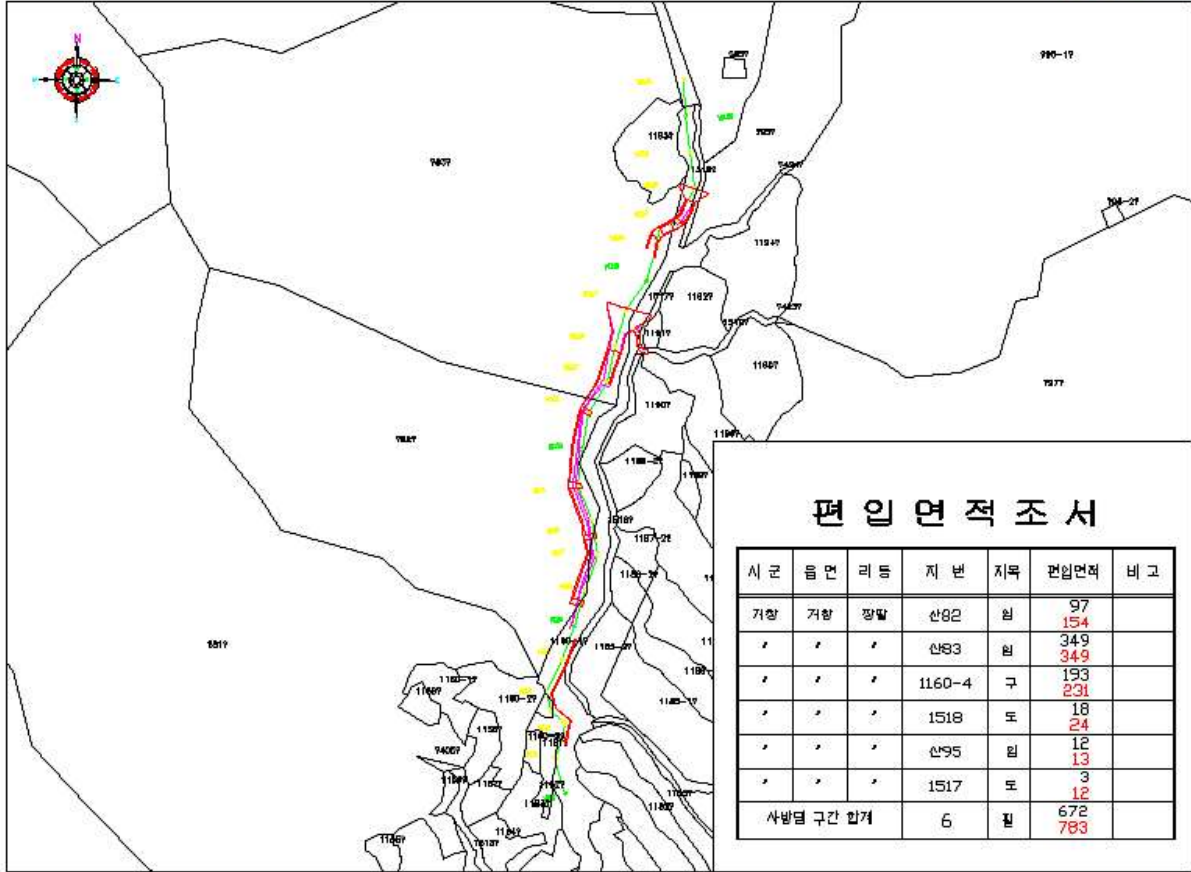
2.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1부. 끝.

토 지 소 재 지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지정 면적 (㎡)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계			6필지		88,282			783	
거창	거창	장팔	산82	임	27,27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83-11 303호	이돈수	154	
거창	거창	장팔	산83	임	46,413	거창읍 장팔리	이근태	349	
거창	거창	장팔	1160-4	구	76		국(농림수산 부)	231	
거창	거창	장팔	1518	도	1,518		국(건설부)	24	
거창	거창	장팔	산95	임	12,893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1356	이태일	13	
거창	거창	장팔	1517	도	109		국(건설부)	12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용 지 도

당초:
 변경:



<지정내역>

토지소재지			사방지 지정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지정면적	고시번호·일자	비고
계			783 m ²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산82 외 5필지	임	783 m ²	2016년 - 3호 (2016. 7. 13.)	사방담